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
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487호
2. 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
3. 발의일자 : 2019. 3. 22.
4. 회부일자 : 2019. 3. 26.

II 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함.
- 이때, 기부채납의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축하여 공공건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·관리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
-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해 사용·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포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.

- 따라서 교육청 및 교육감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사용·관리하는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III. 주요내용
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적용 범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)

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」 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3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9년 3월 22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487호로 발의되어 2019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을 통해 신설하는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
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BF:Barrier Free, 이하 ‘인증’)은 어린이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을 접근·이용·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을 평가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,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장애인등편의법’) 제10조의2제3항1)에 따른 시설 및 동 조례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은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행 법령과 조례에는 인증대상 “신축 건축물”에 기부채납으

---

1) 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"보건복지부장관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 
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 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로 신설된 공공건축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, 동 개정조례안은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 시설이용 약자의 시설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나.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인증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3조 1호 및 2호의 규정 중 인증대상의 요건인 ‘신설’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기부채납이 인증대상의 요건인 ‘신설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, 법제처는 상위법률인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10조의2제3항<sup>2)</sup>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신축’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기부채납<sup>3)</sup>하는 경우까지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<sup>4)</sup>.
- 따라서 동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신설’에는 이미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안 제3조제2호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시교육청의 재정

2)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3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기부채납"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4) 법제처 18-0425.(2018-10-19)

지원을 받아서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제3조제2호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신설하는 사립학교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과 기부채납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, 또한 기부채납이 없더라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인증의 대상이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.(교육시설안전과-3398.,2019.4.9.)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**  
**마치겠습니다.**

# 관계 법령

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

[시행 2016. 8. 12.] [법률 제13805호, 2016. 1. 19., 타법개정]
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"보건복지부장관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·절차, 인증기관 지정 기준·절차, 인증 비용의 부담,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[시행 2018. 10. 16.] [법률 제15794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7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

2.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